

본 연구결과는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에 관한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 200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2003. 6.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연 구 원 : 김용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목 차

<요 약> .....	1
I. 머리말 .....	1
1. 최저임금제의 의의 .....	1
2. 최저임금제의 내용 .....	2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	3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	3
5. 생계비 산출 경위 .....	5
II.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출개요 .....	7
1. 생계비의 정의 .....	7
2. 생계비의 구조 .....	10
3. 생계비 산출 개요 .....	11
III. 2002年 4/4분기 생계비 산출과정 .....	16
1. 소비지출 .....	16
2. 비소비지출 .....	26
IV. 맺음말 .....	30
1. 주요한 개편 내용 .....	30
2. 생계비의 연령별 추계(18세) .....	31
3. 향후 연구과제 .....	33

참고 문헌 .....	35
<부 표> .....	37

## 표 목 차

<표 I-1> 최저임금 적용대상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2
<표 I-2> 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4
<표 I-3>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 .....	4
<표 II-1> 생계비의 구조 .....	10
<표 II-2> 생계비와 가구구성 .....	11
<표 III-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	18
<표 III-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	19
<표 III-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	20
<표 III-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	20
<표 III-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 (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	21
<표 III-6> 1인가구 순식료품비(2002년 4/4분기) .....	22
<표 III-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2년 4/4분기) .....	24
<표 III-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2002년 4/4분기) .....	24
<표 III-9>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2002년 4/4분기) .....	25
<표 III-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2002년 4/4분기) .....	29
<표 IV-1> 2003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2002년 4/4분기) .....	32

## 그림 목차

[그림 Ⅱ-1] 소비지출의 확률밀도함수 .....	8
[그림 Ⅱ-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과정 .....	15
[그림 Ⅲ-1] 조세 추정방식(2002년) .....	27

## 〈요 약〉

### 1. 산출개요

#### 가. 소비지출

- 식료품비: 마켓-바스켓(market basket)방식
  - 각년도 4/4분기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 각년도 4/4분기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권장영양량(2,600kcal)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료품 모형의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비식료품비: 환산승수(multiplier) 방식
  - 「도시가계조사」의 각년도 4/4분기 비목별 평균 지출액(일수 및 가구규모 조정)에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 나. 비소비지출: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

-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함.
- 조세: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됨.
  - 근로소득세: 국세청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에 따라 산출함.
  - 주민세(소득할): 근로소득세의 10.0%로 산출함.
-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됨.
  - 건강보험 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1.815%로 산출함.
  -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소득의 4.5%로 산출함.

- 고용보험 보험료: 임금총액의 0.5%로 산출함.

다.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소비지출의 연령계층별 조정계수 0.8을 적용함.
- 소비지출 생계비: 1인 가구에 대하여 추정된 소비지출 생계비에 단신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지출수준을 감안한 조정계수 0.8을 곱하여 산출함.
- 비소비지출 생계비: 관계법령을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함.

## 2. 산출결과

- 2002년 4/4분기 기준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579,793원/월로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된 전년도의 535,385원/월에 비하여 8.3% 증가함.
-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은 542,483원/월 및 비소비지출은 37,311원/월로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8.7% 및 2.6% 증가함.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추이>

		2000년 4/4분기	2001년 4/4분기	2002년 4/4분기
소비 지출		469,602 ( 12.0 )	499,006 ( 6.3 )	542,483 ( 8.7 )
	식 료 품	147,317 ( 6.1 )	153,629 ( 4.3 )	157,465 ( 2.5 )
	주 거	138,040 ( 20.2 )	140,828 ( 2.0 )	158,789 ( 12.8 )
	광열수도	23,290 ( 18.7 )	23,662 ( 1.6 )	29,818 ( 26.0 )
	가구집기	8,625 (-12.9 )	9,503 ( 10.2 )	10,648 ( 12.0 )
	피복신발	18,599 ( 12.6 )	19,861 ( 6.8 )	23,901 ( 20.3 )
	보건의료	13,890 ( 10.5 )	14,840 ( 6.8 )	16,497 ( 11.2 )
	교육교양	14,777 ( 15.6 )	17,387 ( 17.7 )	18,216 ( 4.8 )
	교통통신	49,968 ( 15.8 )	52,971 ( 6.0 )	64,259 ( 21.3 )
	기타소비	55,096 ( 8.3 )	66,326 ( 20.4 )	62,890 ( -5.2 )
		32,525 ( 11.5 )	36,379 ( 11.8 )	37,311 ( 2.6 )
비소비지출	조 세	0 ( - )	0 ( - )	0 ( - )
	소 득 세	0 ( - )	0 ( - )	0 ( - )
	주 민 세	0 ( - )	0 ( - )	0 ( - )
	사회보험	32,525 ( 11.5 )	36,379 ( 11.8 )	37,311 ( 2.6 )
	건강보험	7,990 ( 18.4 )	9,860 ( 23.4 )	10,520 ( 6.7 )
	고용보험	2,935 ( 12.0 )	3,119 ( 6.3 )	3,391 ( 8.7 )
국민연금	21,600 ( 9.1 )	23,400 ( 8.3 )	23,400 ( 0.0 )	
생 계 비	502,127 ( 12.0 )	535,385 ( 6.6 )	579,793 ( 8.3 )	

주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I. 머리말

본 연구는 2003. 9. 1~2004. 8. 31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산출된 「200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이다. 본 연구원은 매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연구하여 그 산출과정 및 산출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본 연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준거지표인 근로자의 생계비에 대한 분석이다.

### 1.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록 최저임금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경제적 고려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도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927호로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 이후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①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②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 ③기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경영합리화 도모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sup>1)</sup>.

---

1) 최저임금의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五十畑明(1996), Card & Krueger(1995), OECD(1998), Brown(1999) 등 참조.

## 2. 최저임금제의 내용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최저임금법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적용대상 사업체규모가 기존의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7조).

<표 1-1> 최저임금 적용대상 관련 주요 지표 추이

적용기간	적용대상(법)		적용실태 (상용근로자 기준)			적용실태 (전체근로자 기준)		
	규모	산업	적용 근로자 (천명)	수혜 근로자 (천명)	영향률 (%)	적용 근로자 (천명)	수혜 근로자 (천명)	영향률 (%)
88. 1~88.12	10인 이상	제조업	2,267	94	4.2	-	-	-
89. 1~89.12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3	328	10.7	-	-	-
90. 1~90.12	10인 이상	전산업	4,386	187	4.3	-	-	-
91. 1~91.12	10인 이상	전산업	4,556	393	8.6	-	-	-
92. 1~92.12	10인 이상	전산업	4,620	392	8.5	-	-	-
93. 1~93.12	10인 이상	전산업	5,045	228	4.5	-	-	-
94. 1~94. 8	10인 이상	전산업	4,916	102	2.1	-	-	-
94. 9~95. 8	10인 이상	전산업	4,864	103	2.1	-	-	-
95. 9~96. 8	10인 이상	전산업	5,381	103	1.9	-	-	-
96. 9~97. 8	10인 이상	전산업	5,240	127	2.4	-	-	-
97. 9~98. 8	10인 이상	전산업	5,325	124	2.3	-	-	-
98. 9~99. 8	10인 이상	전산업	5,136	23	0.4	-	-	-
99. 9~00. 8	5인 이상	전산업	5,031	54	1.1	-	-	-
00. 9~01. 8	1인 이상	전산업	6,692	141	2.1	-	-	-
01. 9~02. 8	1인 이상	전산업	7,152	201	2.8	-	-	-
02. 9~03. 8	1인 이상	전산업	7,421	215	2.9	13,216	849	6.4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년도.

그리고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1993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씩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994년 이후에는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씩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변경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과 이와 관련된 주요한 지표의 변화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비록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사업체규모 및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영향률은 1989년 10.7%를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2년에는 2.9%에 머무르고 있다<sup>2)</sup>.

###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최근까지의 최저임금 수준 및 그 인상률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내역과 근접하는 정액급여 증가율과 거의 비슷하여, 정액급여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율은 최근에 약 33.1%로 나타나고 있다.

###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 영향률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계비가 준거지표로서 실제적으로 가장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요한 준거지표인 생계비의 종류 및 이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생계비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규정되는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출한 비용 또는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생계비는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실태생계비 및 이론생계비로 분류된다. 그런데 특히 이론생계비는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sup>3)</sup>.

---

2) 최근까지 최저임금 영향률은 자료의 제약상 민간 전산업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정되어 왔다. 따라서 비록 이 지표는 적어도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계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추세를 고려한다면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영향률은 이 수치보다 다소 높게 추정된다. 실제로 2002.9~2003.8의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6.4%로 추정된 바 있다.

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유경준(1998, pp.4~5) 참조.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도시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이를 산정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통계청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는 실태

<표 1-2> 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원, %)

적용기간	최저임금		월환산 시간	최저/정액 급여(월)	증가율		
	시급	월급			최저임금	정액급여	소비자물가
88.1 ~88.12	462.5	111,000	240	35.1			
	487.5	117,000		37.0			
89.1 ~89.12	600.0	141,000	240	37.6	6.6	18.6	5.7
90.1 ~90.12	690.0	155,940	240	35.1	15.0	18.4	8.5
91.1 ~91.12	820.0	185,320	235	35.5	18.8	17.6	9.3
92.1 ~92.12	925.0	209,050	226	35.0	12.8	14.3	6.3
93.1 ~93.12	1,005.0	227,130	226	33.9	8.6	12.3	4.8
94.1 ~94. 8	1,085.0	245,210	226	32.9	8.0	11.3	6.2
94.1 ~95. 8	1,170.0	264,420	226	31.9	7.8	10.9	4.5
95.9 ~96. 8	1,275.0	288,150	226	31.2	9.0	11.7	4.9
96.9 ~97. 8	1,400.0	316,400	226	31.3	9.8	9.4	4.5
97.9 ~98. 8	1,485.0	335,610	226	32.0	6.1	3.7	7.5
98.9 ~99. 8	1,525.0	344,650	226	30.9	2.7	6.1	0.8
99.9 ~00. 8	1,600.0	361,600	226	30.2	4.9	7.3	2.3
00.9 ~01. 8	1,865.0	421,490	226	33.1	16.6	6.5	4.1
01.9 ~02. 8	2,100.0	474,600	226	33.1	12.6	12.5	2.7
02.9 ~03. 8	2,275.0	514,150	226	-	8.3	-	-

주 : 단, 최저임금/정액급여 비율은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하여 10인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표 1-3>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

	조사명칭	조사주기	산출대상기간	표본 크기	비고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매월	매분기	약 5,200가구	2인 이상 가구
	가구소비실태조사	매 5년	10~11월	약 27,000가구	1인 가구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매년	10월	약 3,000가구	1인 가구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매년	11월		표준 가구 전체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매년	12월		표준 가구 전체
한국노동연구원	최임심 생계비	매년	4/4분기		표준 가구 전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매년	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에 각각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 즉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인 가구의 생계비를 회귀분석 또는 환산승수 방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생계비인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생계비 산출 경위

이와 같이 생계비는 작성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서 다른 어떠한 생계비 자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우선, 지난 1987년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산정방식에 근거하고 있었는데<sup>4)</sup>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회의가 1988년 5월 3일~7월 25일에 6차례 개최되었으며, 실무회의에서는 표준생계비를 최빈값 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5)</sup>. 그 이후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는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각각 제출되었다.

그러나 매년 상이한 기준에 따른 다수의 생계비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생계비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생계비 단일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가 구성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1990년 2월 2일 실무소위에서는 생계비 산출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 방식, 산출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생계비 명칭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라 하고 또한 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sup>6)</sup>.

---

4)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인사원 표준생계비 추정방식을 약간 변형한 모형이다. 일본 인사원의 표준생계비는 1991년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a, pp.14~15) 참조.

6) 이 시기의 표준생계비에 대한 연구로 장현준(1987), 박영범·조우현(1989) 등 참조.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추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raw data) 이용상의 제약 등으로 생계비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sup>7)</sup>.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출하고 있는 생계비의 산출과정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가구규모별로 소비지출액 최빈값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 즉 조정계수로 조정하여 비목별·가구원수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생계비」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이후에는 「표준」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출한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로 하고 있다.

---

7)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박영범(1990), 강순희(1995), 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 등 참조.

## Ⅱ.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출개요

### 1. 생계비의 정의

생계비란 근로자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출된 금액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적인 생활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생계비의 산출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가계지출에서 대표적인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설정되는 1인 취업 근로자 가구의 최빈값 계층의 가계지출액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지난 1988년 5~7월에 개최된 최저임금심의회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생계비 산출모형은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의 생계비 산출모형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계층인 최빈값 계층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소비지출액에 대한 최빈값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인 조정계수로 조정하여,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가 산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생계비는 최빈값 계층의 생계비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영향력과 더불어 주요한 준거자료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생계비 산출모형에서 최빈값 계층이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이유와 최빈값 계층은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생계비의 분포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생계비 등 소득과 관련된 변수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한다고 가정된다. 여기서 로그정규분포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양(+)의 확률변수(예컨대, 임금이나 생계비 등)에 로그(log)를 취한 새로운 확률변수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한다면, 원래의 확률변수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

---

8) 이는 최저임금심의회위원회(1988 a, p.14) 참조.

그리고 어떠한 변수에 대한 대표값으로서 평균값(mean) 이외에도 중위값(median)이나 최빈값(mode)이 있는데, 그 변수의 확률밀도함수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의 관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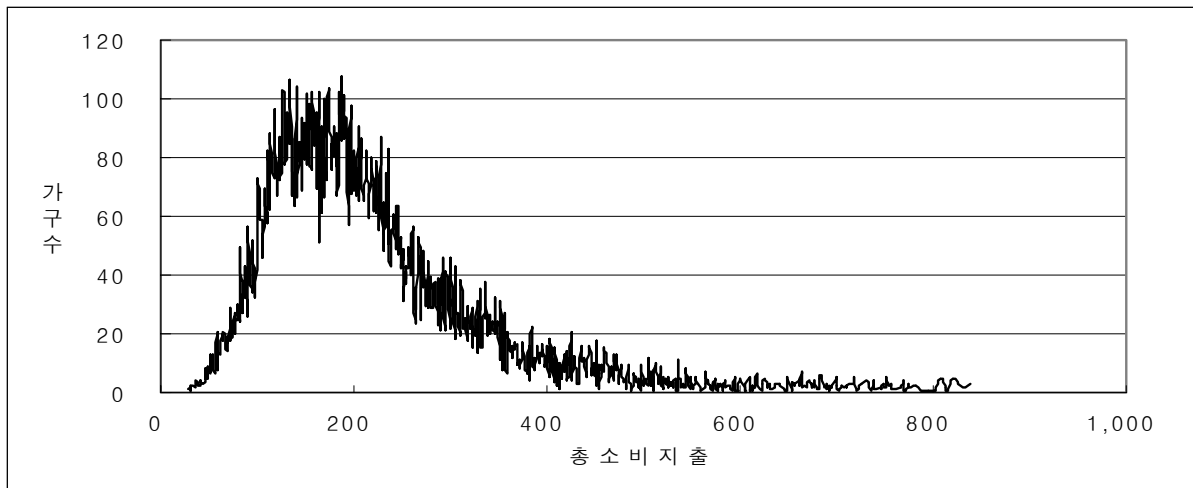
그런데 로그정규분포를 보이는 임금이나 생계비 등에 대한 대표값으로서 평균값보다 최빈값이 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평균값은 최고값이나 최저값 등 극단적인 수치들(outliers)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최빈값은 이들 수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sup>9)</sup>. 즉, 최빈값은 평균값보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분포의 대표값으로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한다. 실제로 분석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생계비의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 II-1]과 같다. 즉, 소비지출액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의 관계도 성립되고 있다.

#### 나. 최빈값 계층의 설정

그런데 최빈값은 특정한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인 최빈값 계층이 설정되기 위

[그림 II-1] 소비지출의 확률밀도함수



주 : 1) 2002년 1/4분기~2002년 4/4분기 1인 취업 근로자 가구.

2) 최빈값 1,279,490원, 중위값 1,934,140원, 평균값 2,260,789원.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9)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b, p.17) 참조.



해서는 통계학적 이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최빈값  $\pm 1/2$  표준편차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10)</sup>.

우선,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의 최빈값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x$ 를 양(+)의 확률변수, 새로운 확률변수  $y$ 는  $x$ 에 로그를 취한 즉  $y = \log x$  라고 하면,  $y$ 는 정규분포 그리고  $x$ 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로그정규분포하는 변수의 확률밀도함수는 식(2-1) 그리고 평균 및 분산은 식(2-2)로 표현된다<sup>11)</sup>.

$$f(x, \mu, \sigma^2)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x - \mu)^2\right] \text{-----}(2-1)$$

단,  $0 < x < \infty, -\infty < \mu < \infty, \sigma > 0$

$$E(\log x) = \mu, \text{Var}(\log x) = \sigma^2 \text{-----}(2-2)$$

그런데 확률변수  $x$ 에 대한 분포에서 최빈값(mode), 즉  $m$ 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cdot)$ 를 최대화시키는  $x$ 값이다<sup>12)</sup>. 즉  $\frac{df(\cdot)}{dx} = 0$  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최빈값  $m$ 으로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frac{df(\cdot)}{dx} = 0 \Leftrightarrow -\frac{1}{x^2\sqrt{2\pi\sigma}} \exp[\cdot] \left\{1 + \frac{1}{\sigma^2}[\log x - \mu]\right\} = 0 \text{-(2-3)}$$

$$\log x = \mu - \sigma^2 \Leftrightarrow x = \exp[\mu - \sigma^2] \text{-----}(2-4)$$

즉,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를 최대화시키는  $x$ 값, 즉  $m = \exp[\mu - \sigma^2]$ 으로 도출된다<sup>13)</sup>.

10)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b, p.35) 참조.

11) Mood, A. M., Graybill, F. A. & Boes, D. C.(1974, p.117) 참조.

12) 김재주·이재창·김용구(1995, p.32) 참조.

13)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최빈값의 도출에 대한 증명이나 최빈값 계층의 설정에 대한 수식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의 표준편차를  $\delta$ 라고 하면 최빈값 계층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  $m \pm \frac{1}{2} \delta$ 으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  $x$ 에 해당하는 변수는 생계비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생계비는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순수한 소비지출액 뿐만 아니라 자가·전세·보증부월세 등 귀속임료를 포함한 총 소비지출액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생계비의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된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대별되고 비식료품비는 다시 8개의 비목으로 세분된다<sup>14)</sup>.

따라서 생계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①식료품, ②주거, ③광열·수도, ④가구·집기 ⑤피복·신발, ⑥보건·의료, ⑦교육·교양, ⑧교통·통신, ⑨기타 소비지출, ⑩비소비지출 등으로 전체 10개가 되고, 각각의 비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sup>15)</sup>.

그런데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라 생계비의 비목별 구성이나 전반적인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구규모별로 표준적인 가구를 선정하고 이들 가구에 대한 생계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이

<표 II-1> 생계비의 구조

생계비	소비 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통·통신 기타 소비	2,600kcal기준(1995년 개정) 월세, 주택설비및수리비, 기타(전세 및 자가평가액 포함) 수도료, 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가사서비스 등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신발 등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양오락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
	비소비지출	조세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소득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14)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단순히 ‘생계비’라고 표현한다.

15) 1995년 이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비지출 대부분류중 이전의 교육·교양오락을 교육, 교양·오락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을 9개로 대부분류한다.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 1인만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1인 취업 근로자 가구를 표준적인 가구로 설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가구 등으로 세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된 표준적인 가구에 대하여 비목별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가구규모별로 합산하여,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출한다. 그리고 비목별 산출방법 개요 및 표준적인 가구는 <표 II-2>와 같이 상정되어 있다.

<표 II-2> 생계비와 가구구성

	생계비의 산정방법	식료품비 비식료품비	마켓·바스켓 방식 환산승수(multiple) 방식
생 계 비	산정대상 가구 구성 (표준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독신남자(18세정도) 부부(1인 취업) 부부와 자녀 1인(1인 취업) 부부와 자녀 2인(1인 취업) 부부와 자녀 3인(1인 취업)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보고서』, 1988, p.19.

### 3. 생계비 산출 개요

비록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①식료품, ②식료품 이외, ③비소비지출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산출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주요 비목에 대한 산출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료품비는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도록 선정된 품목, 즉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에 선정된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식료품 이외의 비식료품비는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추정하여 산출된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산출한다. 끝으로 비소비지출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가. 본 연구의 개선사항

본 연구는 생계비 산출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연구에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 산출시점을 각년도 4/4분기로 한다. 이와 같이 생계비 산출시점을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다른 기관들 예컨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의 생계비 산출시점은 주로 10~12월이다<sup>16)</sup>. 그러나 1998년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는 생계비 산출시점으로 식료품비는 12월,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이 비목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생계비와 산출시점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생계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도 용이하지 않았다. ②1998년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와 같이 식료품 이외 비목의 생계비 산출시점과 생계비 환산승수 추정기간이 동일하다면,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생계비를 산출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sup>17)</sup>.

둘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와 같이 환산승수를 지난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하게 되면, 가구규모별 생계비 격차에 대한 매년의 변화가 환산승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비소비지출은 1988년 8월 12일 개최된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관계법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sup>18)</sup>, 제도의 최근 변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편한다. ①기존의 연구에서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를 생계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물세’가 소비지출중 가구·집기 비목에 ‘쓰레기봉투료’ 항목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조세는 ‘간이소득세액표’가 아닌 국세청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한다.

끝으로,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998년 3월 이후 품목별 소비자가격을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이용되는 「도시가계조사」와 자료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나. 생계비 산출 개요

이하에서는 생계비 산출과정을 본 연구에서의 개선사항을 고려하면서 비목별로 보다 구체

16) 이 밖에도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1991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도 조사대상기간을 10~11월로 하고 있다.

17) 이는 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에서 식료품 이외의 비목별 생계비 산출이 <표 III-4>로 종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8)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a, p.84) 참조.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비식품비

각년도 4/4분기 기준 식품 이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각년도 4/4분기의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지난 1년간(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2002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생계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에 조사된 1인 취업 2~6인 (근로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한다. 이를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으로 나누어 4인가구 기준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한다.

둘째, 「도시가계조사」의 2002년 4/4분기에 조사된 1인 취업 전체 (근로자)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을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가구규모 조정계수를 곱하여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를 산출한다.

셋째, 2002년 4/4분기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앞서 산출된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식품비

각년도 4/4분기 기준 가구규모별 식품 생계비는 각년도 4/4분기의 1인가구 식품비에 지난 1년간(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 식품비의 가구규모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2002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식품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

19) 최근 정진호(1999)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98년 10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통계청은 「도시가계조사」 월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전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전 시기의 월별 자료 또는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생계비를 10월 기준 또는 4/4분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20) 참고로 일본 인사원은 1991년 이후 식품비를 산출하는데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비목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켓·바스켓 방식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선호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행정연구소(1996, p.32) 참조.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에 조사된 1인 취업 2~6인 (근로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료품비의 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한다. 그러나 식료품 이외의 비목과는 달리 1인 이외 가구의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는 1인가구의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로 나누어 1인가구 기준 식료품비의 가구규모별 환산승수를 산출한다.

둘째, 지난 1995년 한국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작성한 순식료품목에 2002년4/4분기 기준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1인가구 순식료품비를 산출하고, 이를 식료품비의 20%로 가정된 외식비를 합산하여 전체 식료품비를 산출한다<sup>21)</sup>.

셋째, 2002년 4/4분기의 1인 이외 가구규모별 식료품비는 앞서 산출된 1인가구 식료품비에 식료품 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3)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은 법적으로 강요된 의무적 지출로서 조세, 사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타비소비 지출도 포함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최근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만으로 구성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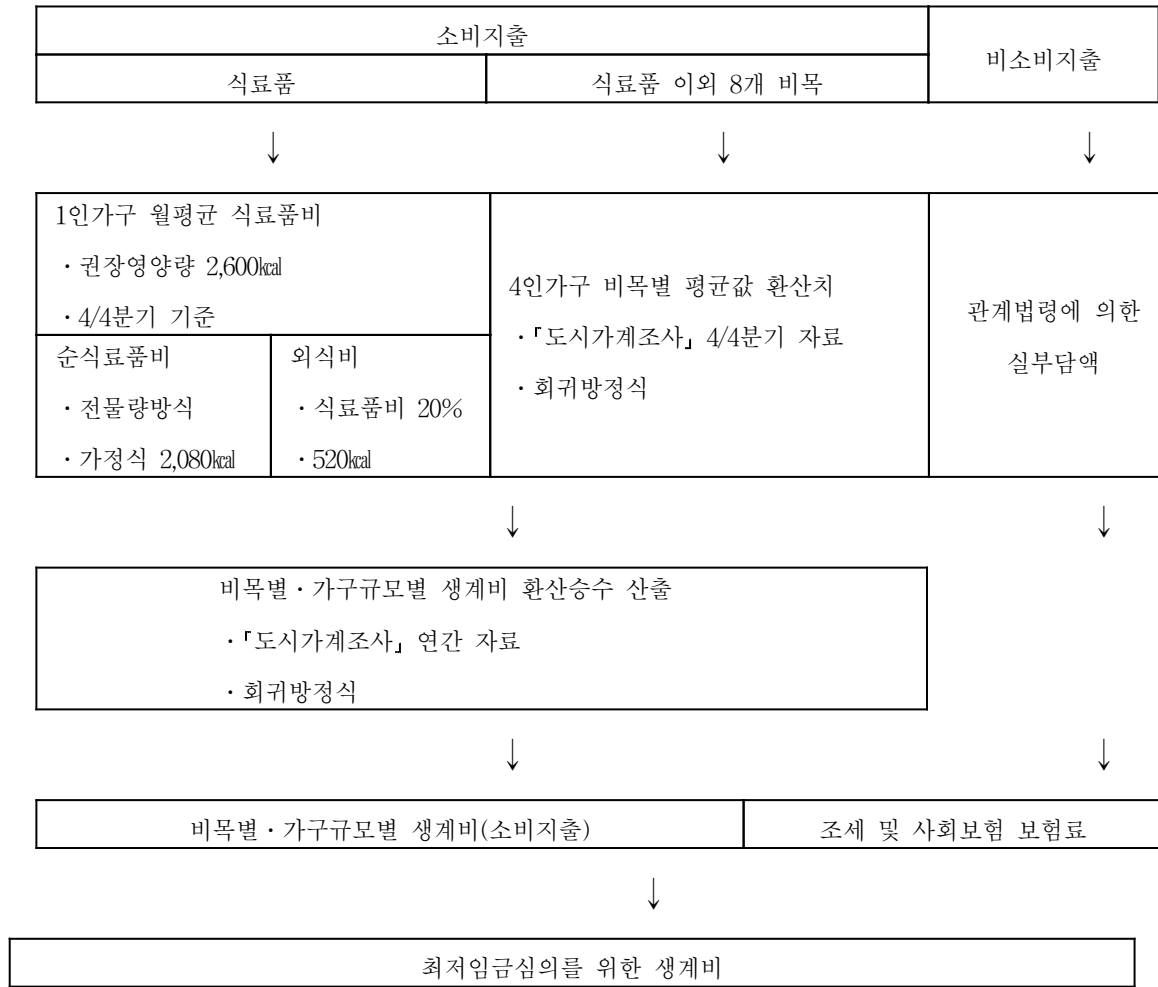
첫째,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되는데 이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둘째,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해당 사회보험 법규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방법은 [그림 II-2]에 요약되어 있다.

---

21) 1인가구 식료품비 산출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유경준(1998, pp.22~25) 참조. 그리고 김초일 박사가 작성한 1인가구 1일 식료품 권장모형에 대해서는 <부표 1-1> 참조.

[그림 11-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과정



### Ⅲ. 2002年 4/4분기 생계비 산출과정

#### 1.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대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 및 교양·오락을 1개의 비목, 즉 교육·교양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분류된 9개의 소비지출 비목은 다시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대별한다. 이는 소비지출과 관련된 생계비의 산출과정이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의 비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식료품비는 전물량(market-basket)방식에 따라 1인가구의 식료품비를 산출하고, 1인 이외 가구의 식료품비는 1인가구의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식료품 이외의 8개 비목별 생계비는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식료품 이외 가구규모별·비목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가. 환산승수

#####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히 가구원수 차이에 기인한 생계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가 계산된다. 생계비 환산승수는 4인가구의 소비지출 평균값에 1인 이외 가구의 소비지출 최빈값(추정치)의 비율로서 정의된다<sup>22)</sup>.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빈값은 평균값보다 작기 때문에 생계비 환산승수는 1보다 작게 된다.

이와 같이 환산승수는 가구규모별 생계비에 대한 추정결과 산출되지만, 역으로 일정한 금

---

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료품비는 이와는 달리 1인가구 최빈값 추정치에 대비한 1인 이외 가구의 최빈값 추정치로 정의된다.



액으로 설정된 4인가구의 생계비에 대응한 4인 이외 가구의 생계비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sup>23)</sup>.

이러한 생계비 환산승수는 비목(*i*)별·가구규모(*j*)별로 식(3-1)과 같이 정의되며,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조사」의 연간(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원자료(raw data)를 이용한다<sup>24)</sup>.

$$\text{비목}(i)\text{별} \cdot \text{가구규모}(j)\text{별 생계비 환산승수} = \frac{j\text{인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4\text{인가구 } i\text{비목 평균값}} \quad (3-1)$$

## 2)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 산출

우선, 2002년도(2001년도 4/4분기~2002년도 3/4분기)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보고서』의 주거비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①월세, ②주택설비 및 수선비, ③기타주거비 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주거비에는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지만 점유형태가 자가·전세·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에 대한 기회비용인 자가평가액·전세평가액·보증부월세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들 가구도 주거에 대하여 가계부상 매월 순주거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각종 귀속임료만큼 주거비의 기회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주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협의의 주거비에 귀속임료(전세·보증부월세·자가 평가액)를 포함시킨 광의의 주거비를 산출한다<sup>25)</sup>.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지출 비목에 대하여 4인가구를 포함한 2~6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을 산출한 결과가 <표 3-1>에 나타나 있다<sup>26)</sup>.

23) 노무행정연구소(1987, p.35) 참조.

24)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이 참석한 1995년 12월 간담회에서 연간 자료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25) 만약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구원수 또는 연령이 낮은 월세 가구의 주거비가 가구원수 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귀속임료를 포함하지 않는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에 비하여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26) 이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주거비는 광의의 주거비 즉 총주거비, 소비지출액은 주거비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총소비지출액을 지칭한다.

<표 III-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단위: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1,236,483	1,503,588	1,784,024	2,126,130	2,027,900
식료품	345,761	414,906	484,713	558,995	560,093
순주거	54,130	45,697	42,003	55,548	43,491
광열수도	69,312	81,769	89,868	109,336	118,054
가구집기	47,198	55,117	65,030	86,105	85,221
피복신발	80,995	86,485	98,135	112,434	112,534
보건의료	66,706	72,810	72,414	114,568	118,071
교육교양	100,648	213,378	372,014	451,096	456,584
교통통신	202,882	236,401	254,253	276,253	226,966
기타소비	268,851	297,024	305,595	361,797	306,887
총소비지출	1,698,119	2,033,983	2,432,594	2,822,005	2,742,699
총주거	515,766	576,092	690,573	751,423	758,289

주: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 3)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식(3-1), 즉 생계비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 가) 제1단계: 가구규모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소비지출액의 가구규모별 최빈값 계층은 소비지출 최빈값에 소비지출 표준편차의 1/2을 전후한 구간으로 설정된다. 즉 소비지출 최빈값을  $m$ , 소비지출 표준편차를  $\delta$ 라고 하면 최빈값 계층은  $m \pm 0.5 \delta$ 로 설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가구규모별로 산출한 소비지출 최빈값  $m_j$ 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평균값  $\bar{u}_j$ 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규모별 조정계수가 필요하다. 가구규모별 조정계수는  $m_j / \bar{u}_j$ 로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액에 해당 가구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서 이용되는 자료가 된다<sup>27)</sup>.

27)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b, pp.35~36) 참조.

[그림 II-1]에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평균값은 전체 가구의 비목별 평균값보다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가구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평균값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III-2>에 나타나 있다.

<표 III-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가구(A)	최빈값 계층가구(B)	비율(=B/A)
2인 가구	1,698,119	1,247,021	0.7344
3인 가구	2,033,983	1,513,009	0.7439
4인 가구	2,432,594	1,872,618	0.7698
5인 가구	2,822,005	2,044,611	0.7245
6인 가구	2,742,699	2,008,228	0.7322

나) 제2단계: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서 이용되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비목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6인가구 최빈값 계층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1인 이외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소비지출  $Y$ 와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  $X$ 간에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sup>28)</sup>.

$$Y = \alpha_2 X^2 + \alpha_1 X + \varepsilon \text{-----}(3-2)$$

이와 같이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각각의 비목에 대하여 식(3-2)을 추정한 결과는 <표 III-3>에 나타나 있다<sup>29)</sup>.

28) 비록 상수항 및 가구원수 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소비지출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가구원수가 0, 즉 가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비지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체감한다고 가정하여 상수항이 없고 가구원수는 2차 항까지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을 설정한다.

29) 회귀분석에서는 2~6인가구의 자료가 이용된다. 실제로 7인 이상 가구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아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표 III-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3,608	162,767	0.8948
주거	-26,244	230,614	0.8507
광열수도	-3,611	36,793	0.6408
가구집기	-1,219	14,234	0.2388
피복신발	-2,764	29,713	0.4206
보건의료	-1,518	20,607	0.2327
교육교양	8,339	18,997	0.5734
교통통신	-9,357	90,826	0.7544
기타소비	-8,797	93,006	0.6670

다) 제3단계: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 산출

이전 단계에서 추정된 비목별 가구원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된 수치는 식(3-1), 즉 생계비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며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는 <표 III-4>에 나타나 있다.

<표 III-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49,160	271,103	365,832	433,345	473,642
주거	204,370	356,253	455,647	502,555	496,974
광열수도	33,182	59,142	77,880	89,397	93,691
가구집기	13,016	23,594	31,735	37,438	40,704
피복신발	26,949	48,370	64,262	74,626	79,462
보건의료	19,089	35,143	48,161	58,144	65,091
교육교양	27,336	71,350	132,042	209,412	303,460
교통통신	81,469	144,224	188,265	213,592	220,205
기타소비	84,209	150,823	199,843	231,269	245,101

4)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의 산출

이제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표 III-4> 및 <표 III-1>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표 III-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 (2001년 4/4분기~2002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0.308	0.559	0.755	0.894	0.977
주 거	0.296	0.516	0.660	0.728	0.720
광열수도	0.369	0.658	0.867	0.995	0.999
가구집기	0.200	0.363	0.488	0.576	0.626
피복신발	0.275	0.493	0.655	0.760	0.810
보건의료	0.264	0.485	0.665	0.803	0.899
교육교양	0.073	0.192	0.355	0.563	0.816
교통통신	0.320	0.567	0.740	0.840	0.866
기타소비	0.276	0.494	0.654	0.757	0.802

예컨대, 2인가구 광열수도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광열수도비 최빈값 추정치 59,142원을 4인가구 광열수도비 평균값 89,868원으로 나눈 0.658로 산출된다.

#### 나. 1인가구 식료품비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출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산정대상은 이전과 같이 중등 활동에 종사하는 18세 남자 성인 근로자이며,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영양소는 에너지(cal)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기존의 민간기관 자료를 거의 대부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자료로 대체한다. 그 동안 식료품비 산출과정에서 이용된 민간기관의 물가자료는 조사대상기간이 매월 상순이거나, 개별 품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71개 항목중에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청, 『소비자 가격조사 가격월보』를 이용하여 식료품을 산정한다. 그러나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의 물가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시장조사에 근거하여 식료품비를 산출한다. 2002년 4/4분기 기준 1인 가구 1일 순식료품비는 <표 III-6>에 나타나 있다.

한편 월평균 총식료품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왜냐하면 1일 순식료품비란

<표 III-6> 1인가구 순식료품비(2002년 4/4분기)

(단위 : 원)

	품목	소비자가격		품목	소비자가격
곡류	쌀	695.67	채소·해초	표고버섯	3.63
	보리쌀	10.53		양송이버섯	2.85
	콩	49.27		느타리버섯	10.50
	팥	5.48		풋고추	64.65
	현미	62.50		김	93.69
	밀가루	3.13		미역	67.23
육류	쇠고기	525.04	다시마	5.00	
	돼지고기	295.17	배추김치	483.36	
	닭고기	33.92	깍두기	108.00	
	내장등(곱창)	20.00			
유란	햄	47.77	과실	사과	199.08
	달걀	53.74		배	19.63
	두부	58.31		감	20.11
어개류	우유	273.75		포도	28.54
	조기	215.00		복숭아	9.87
	명태	229.25		밀감	136.86
	고등어	97.25	수박	116.36	
	갈치	56.49	참외	10.00	
	냉동오징어	83.97	유지·조미료	참기름	23.91
	마른 멸치	233.78		콩기름	7.69
참치통조림	40.68	옥수수기름		3.39	
게맛살	34.59	설탕		5.04	
채소·해초	무	18.74		마늘	60.49
	열무	56.00		소금	5.71
	배추	8.99		참깨	32.88
	양배추	4.58	밤	15.78	
	파	30.45	고추장	28.99	
	양파	25.81	간장	17.41	
	시금치	52.30	된장	19.75	
	콩나물	52.54	빵 및 과자	식빵	38.99
	상추	20.96		국수	26.12
	당근	21.89		라면	32.75
	오이	18.47		땅콩	13.78
	호박	12.81		콜라	67.69
	감자	48.04		유산균발효유	50.77
고구마	38.32	아이스크림	20.39		
전체 (2,164 kcal 기준)					5386.04

주 : 소비자 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를 단순 평균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 가격조사 가격월보』, 2002.10.  
 한국물가협회, 『월간 물가자료』, 2002. 10.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월간 유통물가』, 2002. 10.  
 2002.10.한국노동연구원 자체 시장조사 등.

권장영양량 2,600kcal의 80%를 충족하는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sup>30)</sup>. 따라서 1인가구의 월평균 총식료품비는 월평균일수 365/12일,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20%을 고려하여 산출된다<sup>31)</sup>.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3-3)과 같다.

$$\text{월평균 식료품비} = \text{1일 순식료품비} \times \frac{365}{12} \times \frac{10}{8} \text{-----}(3-3)$$

#### 다. 4인가구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

앞에서 산출된 지난 1년간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에 각년도 4/4분기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곱하면 각년도 4/4분기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가 산출된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인 각년도 4/4분기의 4인가구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들 수치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각년도 4/4분기 전체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및 평균 가구원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각년도 4/4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2~6인가구에 대한 식료품 이외 지출액을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비목별로 식(3-4)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식(3-4)의 추정결과는 <표 III-7>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III-7>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평균가구원수 가구 및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을 추정한다. 특히 4인가구 지출액 추정치  $Y_4$ 를 평균가구원수 가구 지출액 추정치  $Y_A$ 로 나눈 수치를 “가구원수 조정계수”라고 한다. 끝으로 앞서 산출한 전체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에 가구원수 조정계수를 곱하면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가 산출된다.

$$Y = \beta_2 X^2 + \beta_1 X + \epsilon \text{-----}(3-4)$$

예컨대, 2002년 4/4분기에 평균 가구원수는 3.32인이고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93,984이다. 4인가구 월평균 광열수도비 환산치는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 추정치 110,079원을 3.32인 가구의

30) 1인가구 1일 순식료품비는 <표 III-6>에서는 2,164kcal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권장영양량 2,600kcal의 80%에 해당하는 2,080kcal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31) 실제로 외식비 비중에 대한 가정은 월평균 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열수도비 추정치 102,487원으로 나눈 '가구규모 조정계수' 1.0741를 전체가구 평균 광열수도비 93,984에 곱하면 100,946원으로 산출된다.

<표 III-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2년 4/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7,233	194,127	0.8244
주거	-32,284	285,962	0.7291
광열수도	-4,954	47,334	0.6338
가구집기	-1,165	21,627	0.1059
피복신발	-4,296	45,664	0.3239
보건의료	-2,978	31,957	0.1417
교육교양	10,565	33,113	0.4668
교통통신	-13,521	119,113	0.5758
기타소비	-18,753	151,200	0.3914

<표 III-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2002년 4/4분기)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Y <sub>4</sub> )	평균가구원수가구 추정치(Y <sub>A</sub> )	4인가구평균값환산치(Y ×Y <sub>4</sub> ÷Y <sub>A</sub> )
식료품	443,660	500,787	454,220	489,144
주거	634,277	627,297	593,238	670,692
광열수도	93,984	110,079	102,487	100,946
가구집기	57,713	67,861	58,897	66,497
피복신발	99,493	113,917	104,178	108,795
보건의료	71,435	80,186	73,225	78,226
교육교양	232,231	301,494	225,951	309,874
교통통신	237,362	260,109	246,292	250,678
기타소비	276,313	304,750	295,167	285,285

라. 비목별 · 가구규모별 생계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출시점인 2002년 4/4분기의 비목별 · 가구규모별 생계비는 <표 III-5>의 생계비 환산승수에 <표 III-8>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곱하면 산출된다. 그런데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약간 달리 산출된다.



1) 식료품비

산출시점인 2002년 4/4분기의 1인 이외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는 앞에서 산출된 1인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는 식(3-5)에 나타나 있다.

$$j\text{인가구 식료품비} = 1\text{인가구 식료품비} \times \frac{j\text{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1\text{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 \text{-----}(3-5)$$

2)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

산출시점인 2002년 4/4분기의 식료품 이외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표 III-8>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에 <표 III-5>의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면 산출된다. 이는 식(3-6)에 나타나 있다

$$j\text{인가구 } i\text{비목 생계비} = 4\text{인가구 } i\text{비목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 \times j\text{인가구 } i\text{비목 생계비 환산승수} \text{-----}(3-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2002년 4/4분기의 소비지출 관련 생계비는 <표 III-9>에 나타나 있다.

<표 III-9>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2002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96,831	357,749	482,753	571,843	625,019
주거	198,486	345,996	442,530	488,087	482,667
광열수도	37,272	66,433	87,481	100,416	100,845
가구집기	13,309	24,126	32,451	38,283	41,623
피복신발	29,876	53,624	71,243	82,733	88,094
보건의료	20,622	37,964	52,027	62,811	70,316
교육교양	22,770	59,432	109,986	174,432	252,771
교통통신	80,324	142,196	185,618	210,588	217,108
기타소비	78,612	140,799	186,562	215,899	228,812

## 2. 비소비지출

본 연구, 즉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된다. 이는 1988년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생계비에 포함되는 비소비지출 항목으로 법적으로 강요된 의무적 지출만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는 더 이상 비소비지출 생계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물세’가 소비지출중 가구·집기 비목에 ‘쓰레기봉투료’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가. 조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된다<sup>32)</sup>.

####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축률을 근로소득의 20%로 가정하고, 앞서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에 저축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추정한다<sup>33)</sup>.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정된 연간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인적 공제액, 특별 공제액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12로 나누어 근로소득세(월할분)를 산출한다.

#### 2) 주민세(소득할)

---

32) 1990년 12월 31일 방위세의 폐지로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만 구성된다.

33)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축액을 생계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액(조세 및 사회보험료)을 산출하려면 저축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20%로 가정한다. 즉 소비지출액의 25%를 저축액으로 가정한다.

주민세(소득할)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산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2년의 조세 산출방식은 [그림 III-1]과 같다.

나. 사회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된다. 그

[그림 III-1] 조세 추정방식(2002년)

①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	연간근로소득(추정) = 월간소비지출 × 10/8 × 12	
②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구간	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	근로소득 전액공제
	500~1,500만원 이하	500만원+(근로소득 - 500만원) × 45%
	1,500~3,000만원 이하	950만원+(근로소득 - 1,500만원) × 15%
	3,000~45,000만원 이하	1,175만원+(근로소득 - 3,000만원) × 10%
	4,500만원초과	1,325만원+(근로소득 - 4,500만원) × 5%
③근로소득 금액	③ = ① - ②	
④인적공제	기본공제: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단신가구 200만원, 2인의 경우 250만원, 3인 가구 300만원, 4인 가구 400만원, 5인가구 500만원	
⑤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표준보수월액 × 1.815% 고용보험보험 보험료= 임금총액 × 0.5% 국민연금보험료=표준보수월액 × 4.5%(단, 100% 공제)	
⑥과세표준	⑥ = ③ - (④ + ⑤)	
⑦산출세액	⑦ = ⑥ × 한계세율(9~36%) - 상수	
	과세표준구간	산출세액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 × 9% - 0만원
	1000~4000만원	과세표준 × 18% - 90만원
	4000~8000만원	과세표준 × 27% - 450만원
	8000만원초과	과세표준 × 36% - 1,170만원
⑧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2만 5천원 + 50만원 초과분 30% 최대 40만원	
⑨ 결정세액(소득세)	⑨ = ⑦ - ⑧ 주민세(소득할) = ⑨ × 10%	

자료 : 국세청,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2002.

런데 각종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수월액 또는 임금총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선,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추정근로소득의 85%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추정근로소득으로 가정한다.

### 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비록 개별 건강보험조합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보수월액의 약 1.815%로 2001년의 1.7%에 비하여 소폭 인상되었다. 2002년 현재 보수월액 계층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는 <부표 1-2>에 나타나 있다.

### 2)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2년 현재 표준보수월액의 4.5%로 1999년의 3.0%에서 인상되었다. 전년도와의 차이는 본인명의 연금납부는 50%에서 100%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 현재 보수월액 계층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는 <부표 1-3>에 나타나 있다.

### 3) 고용보험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2002년 현재 임금총액의 0.5%로 1998년의 0.3%보다 인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내역은 <표 III-10>에 나타나 있다. 특히 조세보다 사회보험 보험료율의 인상이 비소비지출 생계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2002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출	678,103	1,228,320	1,650,649	1,945,092	2,107,253
비소비지출	47,628	105,485	147,129	183,003	201,813
조 세	0	19,768	31,263	43,546	48,712
소 득 세	0	17,971	28,421	39,588	44,284
주 민 세	0	1,797	2,842	3,959	4,428
사회 보험	47,628	85,717	115,867	139,457	153,100
건강보험	13,240	23,590	30,850	38,650	41,380
고용보험	4,238	7,677	10,317	12,157	13,170
국민연금	30,150	54,450	74,700	88,650	98,550

## IV. 맺음말

이하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생계비 산출방식의 주요한 개편 내용을 요약하고, 생계비의 가구원수 이외에 연령별 추정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생계비에 대한 기존의 산출방식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1. 주요한 개편 내용

본 연구는 기존 연구(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의 분석방법론을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산출방식을 개편하여 생계비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편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4)</sup>.

첫째, 생계비의 산출시점을 각년도 4/4분기로 한다. 이와 같이 생계비 산출시점을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다른 기관들 예컨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생계비 산출시점은 주로 10~12월이다. 그러나 1998년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는 생계비 산출시점으로 식료품비는 12월,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이 비목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생계비와 산출시점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생계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②1998년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와 같이 식료품 이외 비목의 생계비 산출시점과 생계비 환산승수 추정기간이 동일하다면,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생계비를 산출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환산승수를 지난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하게 되면, 가구규모별 생계비 격차의 매년 변화가 환산승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편한다. ①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를 생계

---

34) 이는 정진호(1999, 2000 a)에서도 동일하다.

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물세’가 소비지출중 가구·집기 비목에 ‘쓰레기봉투료’ 항목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조세는 ‘간이소득세액표’가 아닌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안내』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한다.

끝으로,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격월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998년 3월 이후 품목별로 소비자가격을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 이용된 「도시가계조사」와 자료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2. 생계비의 연령별 추계(18세)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데 주요한 준거지표인 생계비는 ‘암묵적으로’ 18세 미혼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35)</sup>.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단신근로자 생계비」도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1인 가구의 생계비도 연령계층별 특히 18세에 대해서 별도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1인 가구 비목별 생계비는 분석자료인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 1인 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분석결과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1인 가구의 생계비에는 1인 가구와는 상당히 다른 2인 이상 가구의 속성(예; 가구주연령, 결혼여부 등)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2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현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sup>36)</sup> 거의 대부분 부부 및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주가 기혼인 가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구속성의 차이 때문에 추정된 1인 가구의 생계비는 18세 단신근로자와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인적 속성의 현저한 차이를 통제하고 18세 단신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우선, 생계비를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포함된 가구원수뿐만 아니라 가구주연령, 결혼여부 등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 최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조사대

35)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b, p.58) 참조.

36) 참고로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2인 가구 28.8세, 3인 가구 30.6세, 4인 가구 32.8세, 5인 가구 40.7세로 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b, p.58) 참조.

상이 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록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조사가 지난 1991, 1996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활용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표 IV-1> 2003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2002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비지출	542,483	678,103	1,228,320	1,650,649	1,945,092	2,107,253
식료품	157,465	196,831	357,749	482,753	571,843	625,019
주거	158,789	198,486	345,996	442,530	488,087	482,667
광열수도	29,818	37,272	66,433	87,481	100,416	100,845
가구집기	10,648	13,309	24,126	32,451	38,283	41,623
피복신발	23,901	29,876	53,624	71,243	82,733	88,094
보건의료	16,497	20,622	37,964	52,027	62,811	70,316
교육교양	18,216	22,770	59,432	109,986	174,432	252,771
교통통신	64,259	80,324	142,196	185,618	210,588	217,108
기타소비	62,890	78,612	140,799	186,562	215,899	228,812
비소비지출	37,311	47,628	105,485	147,129	183,003	201,813
조세	0	0	19,768	31,263	43,546	48,712
소득세	0	0	17,971	28,421	39,588	44,284
주민세	0	0	1,797	2,842	3,959	4,428
사회보험	37,311	47,628	85,717	115,867	139,457	153,100
의료보험	10,520	13,240	23,590	30,850	38,650	41,380
고용보험	3,391	4,238	7,677	10,317	12,157	13,170
국민연금	23,400	30,150	54,450	74,700	88,650	98,550
생계비	579,793	725,731	1,333,804	1,797,778	2,128,095	2,309,066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

따라서 차선택으로 본 연구에서도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이고 생계비도 가구주의 연령과 더불어 변화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여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다. 첫째, 18세~24세 최빈값 계층 소비지출 평균값의 표본 전체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평균값에 대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0.8로 산출되는데, 이를 <표 III-10>의 1인 가구 소비지출 비목별 생계비에 적용하여 18세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 생계비를 산출한다<sup>37)</sup>. 둘째, 비소

37) 노동계는 특히 식료품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식료품비 포함한 소비지출 모든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이러한 조정방식이 가능하지만, 「도시가계조사」에서 청소년층의 표본이 매우 작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비지출 생계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를 관계법령에 따른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18세 단신근로자에 대한 「2003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표 IV-1>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2002년 4/4분기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579,793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동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535,385원에 비하여 8.3%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의 증가율은 각각 8.7% 및 2.6%로 나타나고 있다.

###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산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향후 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이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생계비를 산출하는데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원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최빈값 계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이상치는 특히 최빈값 계층의 설정에 이용되는 표준편차 그리고 일련의 추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물량방식의 식료품비 산출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전물량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지난 1995년에 작성된 표준식단은 최근의 식생활변화를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식료품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적어도 전물량방식은 품목을 일정 기간 고정시키기 때문에, 소득수준 및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실태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식료품비도 다른 비목과 마찬가지로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구원수·비목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빈값 계층의 원자료를 가구규모별 조정계수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가구규모별 조정계수 때문에 이전의 「표준생계비」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포함한 새로운 생계비모형 개발 및 분석결과의 최저임금심의 이외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1인 또는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자료의 제약상 주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모형의 적합도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가구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추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령계층별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가구조사실태조사」의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에 소비자물가 및 소비수준의 변동을 감안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생계비를 추정하는데, 기존의 연구보다 다양한 자료와 방식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 문헌

- 강순희(1995), 「1995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KLI.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실무편람』, 각년도.  
국세청,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각년도.  
김재주·이재창·김용구(1995), 『수리경제학개론』, 제2판, 경문사.  
김종한(2000),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KLI.  
박영범(1990),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KLI.  
박영범·조우현(1989),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KLI.  
배무기(1998), 『노동경제학』, 개정 제3판, 경문사.  
유경준(1997),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_\_\_\_\_(1998),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장현준(1987),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KDI.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각년도.  
정인수(1996), 「1996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정진호(1999 a),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_\_\_\_\_(2000 a), 「2000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_\_\_\_\_(2000 b), 「최저임금 심의 준거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 정책연구』, KLI.  
조우현(1990),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 가지 문제점」, 『경제학연구』, 제38집, 제1호, pp.143~159.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 a), 『1989년도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1988.  
\_\_\_\_\_(1988 b), 『근로자표준생계비보고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 각년도.

- \_\_\_\_\_,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 통계청, 『1991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3.
- \_\_\_\_\_,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8.
- \_\_\_\_\_,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_\_\_\_\_, 『물가조사』, 각년도.
- \_\_\_\_\_,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각호.
- 한국공업표준협회(1990), 『생계비와 임금』, 한국공업표준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시근로자 생계비』, 각년도.
- 勞務行政研究所(1987), 『賃金と生計費資料』, 勞務行政研究所.
- \_\_\_\_\_(1996), 『賃金と生計費資料』, 勞務行政研究所.
- 五十畑明(1996), 『新たなる最低賃金制』, 日本勞務研究會.
- 日本 勞働基準調査會, 『最低賃金決定要覽』, 각년도.
- 日本 勞務行政研究所, 『賃金決定のための物價の生計費資料』, 각년도.
- Bosworth, D., Dawkins, P. & Stromback. T.(1996), *The Economics of the Labour Market*, Longman.
- Brown, C.(199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shenfelter, O. & Card, 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3, Elsevier, pp.2101-2163.
- Card, D. & Krueger, A. B.(1995),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hrenberg, R. G. & Smith, R. S.(1994), *Modern Labor Economics*, 5th ed., Harper Collins.
- Mood, A. M., Graybill, F. A. & Boes, D. C.(1974),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3th ed., McGraw-Hill.
- OECD(1998),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Employment Outlook*, OECD, pp.31-79,
- Polachek, S. W. & Siebert, W. S.(1993), *The Economics of Earn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부 표〉

〈부표 1〉 참고자료

〈부표 2〉 2002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부표 3〉 200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 〈부표 1〉 참고자료

<부표 1-1> 1인가구 1일 식료품 권장 모형(18세 근로자)

식품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 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 아신 (mg)	VC (mg)	구입량 (g)
쇠고기	15	33	3.2	2.1	0.0	0.0	1.7	0.4	1.8	0.01	0.03	0.9	0.2	15
돼지고기	30	71	6.3	4.8	0.1	0.0	2.1	0.5	1.5	0.17	0.05	1.7	0.6	30
닭고기	10	24	2.0	1.6	0.0	0.0	1.0	0.0	5.1	0.01	0.01	0.7	0.1	13
햄·소시지	5	14	0.6	1.1	0.3	0.0	0.8	0.1	0.0	0.01	0.00	0.1	0.5	5
내장 등	5	7	0.5	0.6	0.0	0.0	0.6	0.1	0.8	0.00	0.01	0.1	0.0	5
육류	65	149	12.6	10.2	0.4	0.0	6.2	1.1	9.2	0.20	0.10	3.5	1.4	
냉동오징어														
조기	15	14	2.9	0.2	0.0	0.0	3.8	0.1	0.3	0.01	0.01	0.4	0.0	20
명태	5	8	1.0	0.4	0.0	0.0	2.7	0.1	1.1	0.00	0.01	0.3	0.1	10
고등어	15	12	2.6	0.1	0.0	0.0	16.4	0.2	2.6	0.01	0.02	0.3	0.0	39
갈치	10	18	2.0	1.0	0.0	0.0	2.6	0.2	2.3	0.02	0.05	0.8	0.1	17
갈치	5	7	0.9	0.4	0.0	0.0	2.3	0.1	1.0	0.01	0.01	0.1	0.1	8
참치통조림	5	12	1.0	0.8	0.0	0.0	0.3	0.1	0.0	0.00	0.00	0.5	0.0	5
마른멸치(중)	10	23	3.9	0.5	0.5	0.0	129.0	1.6	0.0	0.01	0.01	0.2	0.0	10
게맛살	10	11	1.1	0.1	1.5	0.0	21.8	0.1	0.0	0.00	0.01	0.1	0.0	10
어깨류	75	95	15.4	3.5	2.0	0.0	178.9	2.5	7.3	0.06	0.12	3.7	0.3	
달걀	25	40	3.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30
난류	25	40	3.1	2.7	0.2	0.0	9.8	0.5	39.8	0.02	0.11	0.0	0.0	
두부	50	40	4.2	1.8	1.5	0.1	79.5	1.3	0.0	0.03	0.02	0.4	0.0	50
콩	10	40	3.6	1.8	2.6	0.5	24.5	0.7	0.0	0.05	0.03	0.2	0.0	10
팥	1	3	0.2	0.0	0.6	0.0	0.8	0.1	0.0	0.01	0.00	0.0	0.0	1
두류	61	83	8.0	3.6	4.7	0.6	104.8	2.1	0.0	0.09	0.05	0.6	0.0	
고추장	5	11	0.3	0.1	2.2	0.1	2.8	0.1	19.5	0.01	0.01	0.1	0.0	5
간장	8	4	0.6	0.0	0.4	0.0	3.1	0.2	0.0	0.00	0.01	0.1	0.0	8
된장	8	13	1.1	0.7	0.6	0.3	6.7	0.2	0.0	0.00	0.01	0.1	0.0	8
소금	4	0	0.0	0.0	0.0	0.0	1.6	0.0	0.0	0.00	0.00	0.0	0.0	4
조미료류	25	28	2.0	0.8	3.2	0.4	14.2	0.5	19.5	0.01	0.03	0.3	0.0	
깨	3	17	0.8	1.6	0.5	0.2	34.5	0.3	0.0	0.02	0.01	0.2	0.0	3
밤	2	3	0.1	0.0	0.7	0.0	0.6	0.0	0.2	0.01	0.00	0.0	0.2	3
땅콩	2	11	0.5	1.0	0.4	0.1	1.0	0.1	0.0	0.01	0.00	0.3	0.0	2
종실·견과류	7	31	1.2	2.6	1.6	0.3	36.1	0.4	0.2	0.04	0.01	0.5	0.2	
소계	258	426	42.3	23.4	13.1	1.3	350.0	7.1	76.0	0.42	0.42	8.6	1.9	

고기·생선·계란·콩류

<부표 1-1>의 계속

식품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 아신 (mg)	VC (mg)	구입량 (g)
배추김치	80	14	1.6	0.4	2.1	1.0	37.6	0.6	38.4	0.05	0.05	0.6	11.2	80
깍두기	30	10	0.5	0.1	2.0	0.2	11.1	0.1	11.4	0.04	0.02	0.2	5.7	30
콩나물	30	10	1.6	0.4	0.8	0.2	7.8	0.2	0.0	0.04	0.03	0.2	3.9	30
양파	25	9	0.3	0.0	2.0	0.1	4.0	0.1	0.0	0.01	0.01	0.0	2.0	28
호박	10	3	0.1	0.0	0.7	0.0	6.1	0.2	14.0	0.01	0.01	0.1	4.0	10
파	15	4	0.2	0.0	0.8	0.2	12.2	0.2	19.4	0.01	0.01	0.1	3.2	19
오이	10	1	0.1	0.0	0.2	0.1	2.4	0.0	2.1	0.01	0.00	0.0	1.1	11
상치	5	1	0.1	0.0	0.2	0.0	2.8	0.0	18.3	0.00	0.00	0.0	1.0	5
당근	10	3	0.1	0.0	0.8	0.1	4.0	0.1	127.0	0.01	0.01	0.1	0.8	12
시금치	15	4	0.4	0.1	0.7	0.1	6.5	0.4	71.6	0.02	0.04	0.2	9.9	18
풋고추	10	2	0.2	0.0	0.4	0.3	1.3	0.1	5.2	0.01	0.01	0.1	7.2	11
마늘	10	12	0.9	0.0	2.4	0.1	1.4	0.1	0.1	0.02	0.01	0.1	0.9	12
양배추	5	2	0.1	0.0	0.4	0.0	1.9	0.0	0.2	0.00	0.00	0.0	1.5	6
배추	10	1	0.1	0.0	0.2	0.1	5.1	0.0	0.9	0.01	0.01	0.0	4.6	11
열무	15	3	0.3	0.0	0.5	0.2	37.4	0.5	55.2	0.01	0.02	0.1	11.3	19
무우	20	4	0.2	0.0	0.8	0.1	5.2	0.1	1.6	0.01	0.00	0.1	3.0	21
채소류	300	83	6.8	1.0	15.0	2.8	146.8	2.7	365.4	0.26	0.23	1.9	71.3	
감자	35	28	0.5	0.1	6.5	0.2	1.1	0.6	0.0	0.06	0.01	0.4	6.3	38
고구마	15	19	0.2	0.0	4.5	0.1	3.6	0.1	2.9	0.01	0.01	0.1	3.8	17
서류	50	47	0.7	0.1	11.0	0.3	4.7	0.7	2.9	0.07	0.02	0.5	10.1	
느타리	3	1	0.1	0.0	0.1	0.0	0.1	0.0	0.0	0.01	0.01	0.2	0.1	3
표고	1	3	0.2	0.0	0.6	0.1	0.2	0.0	0.0	0.00	0.02	0.2	0.0	1
양송이	1	0	0.0	0.0	0.0	0.0	0.1	0.0	0.0	0.00	0.01	0.0	0.0	1
버섯류	5	4	0.3	0.0	0.7	0.0	0.4	0.0	0.0	0.01	0.04	0.4	0.1	
미역	5	10	1.0	0.1	0.2	0.0	48.0	0.5	27.8	0.01	0.05	0.2	0.9	5
다시마	1	2	0.1	0.0	0.4	0.0	7.1	0.1	1.0	0.00	0.00	0.0	0.2	1
김	4	10	1.5	0.1	1.5	0.1	13.0	0.7	150.0	0.05	0.12	0.4	3.7	4
해조류	10	22	2.6	0.2	2.1	0.1	68.1	1.3	178.8	0.06	0.17	0.6	4.8	
사과	45	26	0.1	0.0	6.9	0.2	1.4	0.1	1.4	0.00	0.00	0.0	1.8	55
배	5	2	0.0	0.0	0.6	0.0	0.2	0.0	0.0	0.00	0.00	0.0	0.2	7
감	5	2	0.0	0.0	0.6	0.1	0.4	0.0	1.2	0.00	0.00	0.0	2.5	7
포도	5	3	0.0	0.0	0.8	0.0	0.2	0.0	0.0	0.00	0.00	0.0	0.4	8
복숭아	5	2	0.0	0.0	0.4	0.0	0.2	0.0	0.1	0.00	0.00	0.0	0.4	6
귤	30	14	0.2	0.1	3.5	0.1	5.4	0.1	2.4	0.03	0.02	0.2	11.7	40
수박	40	12	0.3	0.0	3.1	0.0	2.4	0.1	11.2	0.02	0.01	0.1	2.4	64
참외	5	2	0.1	0.0	0.4	0.0	0.3	0.0	0.0	0.00	0.00	0.1	1.1	7
과일류	140	73	0.7	0.1	16.3	0.4	10.5	0.3	16.3	0.05	0.03	0.4	20.5	
소계	505	229	10.1	1.2	45.1	3.6	230.5	5.0	563.4	0.45	0.49	3.8	106.8	

채소·과일류

<부표 1-1>의 계속

	식품명	가식부 중량 (g)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섬유 소 (g)	칼슘 (mg)	철분 (mg)	VA (R.E.)	VB1 (mg)	VB2 (mg)	나이 아신 (mg)	VC (mg)	구입량 (g)
곡류· 전분류	쌀	300	1044	19.5	3.3	228.6	0.6	15.0	1.5	0.0	0.42	0.06	3.9	0.0	300
	보리	5	17	0.5	0.1	3.8	0.0	1.9	0.1	0.0	0.01	0.00	0.2	0.0	5
	식빵	15	42	1.4	0.9	7.0	0.0	4.2	0.1	0.3	0.01	0.01	0.2	0.0	15
	국수	20	74	2.3	0.1	14.9	0.1	7.8	0.4	0.0	0.03	0.06	0.3	0.0	20
	라면	10	38	0.9	1.4	6.1	0.1	1.6	0.1	0.7	0.06	0.04	0.1	0.0	10
	밀가루	5	18	0.5	0.1	3.7	0.0	0.6	0.1	0.0	0.01	0.00	0.1	0.0	5
	현미	5	18	0.3	0.1	3.8	0.2	0.1	0.2	0.0	0.02	0.00	0.1	0.0	5
소계	360	1251	25.4	6.0	267.9	1.0	31.2	2.5	1.0	0.56	0.17	4.9	0.0		
우유· 제품	우유	160	96	5.1	5.1	7.5	0.0	168.0	0.2	44.8	0.06	0.22	0.2	1.6	150
	유산균발효유	30	16	0.2	0.3	2.9	0.0	3.6	0.1	0.0	0.24	0.02	0.1	4.5	30
	아이스크림	5	11	0.2	0.7	1.0	0.0	6.1	0.0	7.6	0.00	0.01	0.0	0.0	5
	소계	195	123	5.5	6.1	11.4	0.1	177.7	0.3	52.4	0.30	0.25	0.3	6.1	
유지· 당류	콩기름	5	44	0.0	5.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5
	참기름	2	18	0.0	2.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옥수수기름	2	18	0.0	2.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2
	유지류	9	80	0.0	9.0	0.0	0.0	0.0	0.0	0.0	0.00	0.00	0.0	0.0	
	설탕	5	19	0.0	0.0	5.0	0.0	0.2	0.0	0.0	0.00	0.00	0.0	0.0	5
	콜라	90	36	0.0	0.0	9.0	0.0	1.8	0.0	0.0	0.00	0.00	0.0	0.0	90
	당류	95	55	0.0	0.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소계	104	135	0.0	1.0	14.0	0.0	2.0	0.0	0.0	0.00	0.00	0.0	0.0		
총 계	1,422	2,164	83.3	45.7	361.5	5.9	791.4	14.9	692.8	1.73	1.33	17.6	114.8		



<부표 1-2> 국민건강보험(직장) 보험료

(단위 : 원)

등급	보수월액	표준 보수월액	보험료	등급	보수월액	표준 보수월액	보험료
1	300,000미만	280,000	5,080	51	7,750,000 ~ 8,050,000	7,900,000	143,380
2	300,000 ~ 350,000	330,000	5,980	52	8,050,000 ~ 8,350,000	8,200,000	148,830
3	350,000 ~ 400,000	380,000	6,890	53	8,350,000 ~ 8,650,000	8,500,000	154,270
4	400,000 ~ 450,000	430,000	7,800	54	8,650,000 ~ 8,950,000	8,800,000	159,720
5	450,000 ~ 500,000	480,000	8,710	55	8,950,000 ~ 9,250,000	9,100,000	165,160
6	500,000 ~ 550,000	530,000	9,610	56	9,250,000 ~ 9,550,000	9,400,000	170,610
7	550,000 ~ 600,000	580,000	10,520	57	9,550,000 ~ 9,850,000	9,700,000	176,050
8	600,000 ~ 650,000	630,000	11,430	58	9,850,000 ~ 10,150,000	10,000,000	181,500
9	650,000 ~ 700,000	680,000	12,340	59	10,150,000 ~ 10,450,000	10,300,000	186,940
10	700,000 ~ 750,000	730,000	13,240	60	10,450,000 ~ 10,750,000	10,600,000	192,390
11	750,000 ~ 850,000	800,000	14,520	61	10,750,000 ~ 11,200,000	10,980,000	199,280
12	850,000 ~ 950,000	900,000	16,330	62	11,200,000 ~ 11,600,000	11,400,000	206,910
13	950,000 ~ 1,050,000	1,000,000	18,150	63	11,600,000 ~ 12,100,000	11,850,000	215,070
14	1,050,000 ~ 1,150,000	1,100,000	19,960	64	12,100,000 ~ 12,600,000	12,350,000	224,150
15	1,150,000 ~ 1,250,000	1,200,000	21,780	65	12,600,000 ~ 13,100,000	12,850,000	233,220
16	1,250,000 ~ 1,350,000	1,300,000	23,590	66	13,100,000 ~ 13,600,000	13,350,000	242,300
17	1,350,000 ~ 1,450,000	1,400,000	25,410	67	13,600,000 ~ 14,200,000	13,900,000	252,280
18	1,450,000 ~ 1,550,000	1,500,000	27,220	68	14,200,000 ~ 14,700,000	14,450,000	262,260
19	1,550,000 ~ 1,650,000	1,600,000	29,040	69	14,700,000 ~ 15,300,000	15,000,000	272,250
20	1,650,000 ~ 1,750,000	1,700,000	30,850	70	15,300,000 ~ 15,900,000	15,600,000	283,140
21	1,750,000 ~ 1,900,000	1,830,000	33,210	71	15,900,000 ~ 16,600,000	16,250,000	294,930
22	1,900,000 ~ 2,050,000	1,980,000	35,930	72	16,600,000 ~ 17,200,000	16,900,000	306,730
23	2,050,000 ~ 2,200,000	2,130,000	38,650	73	17,200,000 ~ 17,900,000	17,550,000	318,530
24	2,200,000 ~ 2,350,000	2,280,000	41,380	74	17,900,000 ~ 18,600,000	18,250,000	331,230
25	2,350,000 ~ 2,500,000	2,430,000	44,100	75	18,600,000 ~ 19,400,000	19,000,000	344,850
26	2,500,000 ~ 2,650,000	2,580,000	46,820	76	19,400,000 ~ 20,200,000	19,800,000	359,370
27	2,650,000 ~ 2,800,000	2,730,000	49,540	77	20,200,000 ~ 21,000,000	20,600,000	373,890
28	2,800,000 ~ 2,950,000	2,880,000	52,270	78	21,000,000 ~ 21,800,000	21,400,000	388,410
29	2,950,000 ~ 3,100,000	3,030,000	54,990	79	21,800,000 ~ 22,700,000	22,250,000	403,830
30	3,100,000 ~ 3,250,000	3,180,000	57,710	80	22,700,000 ~ 23,600,000	23,150,000	420,170
31	3,250,000 ~ 3,450,000	3,350,000	60,800	81	23,600,000 ~ 24,500,000	24,050,000	436,500
32	3,450,000 ~ 3,650,000	3,550,000	64,430	82	24,500,000 ~ 25,500,000	25,000,000	453,750
33	3,650,000 ~ 3,850,000	3,750,000	68,060	83	25,500,000 ~ 26,600,000	26,050,000	472,800
34	3,850,000 ~ 4,050,000	3,950,000	71,690	84	26,600,000 ~ 27,600,000	27,100,000	491,860
35	4,050,000 ~ 4,250,000	4,150,000	75,320	85	27,600,000 ~ 28,700,000	28,150,000	510,920
36	4,250,000 ~ 4,450,000	4,350,000	78,950	86	28,700,000 ~ 29,900,000	29,300,000	531,790
37	4,450,000 ~ 4,650,000	4,550,000	82,580	87	29,900,000 ~ 31,100,000	30,500,000	553,570
38	4,650,000 ~ 4,850,000	4,750,000	86,210	88	31,100,000 ~ 32,300,000	31,700,000	575,350
39	4,850,000 ~ 5,050,000	4,950,000	89,840	89	32,300,000 ~ 33,600,000	32,950,000	598,040
40	5,050,000 ~ 5,250,000	5,150,000	93,470	90	33,600,000 ~ 35,000,000	34,300,000	622,540
41	5,250,000 ~ 5,500,000	5,380,000	97,640	91	35,000,000 ~ 36,400,000	35,700,000	647,950
42	5,500,000 ~ 5,750,000	5,630,000	102,180	92	36,400,000 ~ 37,800,000	37,100,000	673,360
43	5,750,000 ~ 6,000,000	5,880,000	106,720	93	37,800,000 ~ 39,300,000	38,550,000	699,680
44	6,000,000 ~ 6,250,000	6,130,000	111,250	94	39,300,000 ~ 40,900,000	40,100,000	727,810
45	6,250,000 ~ 6,500,000	6,380,000	115,790	95	40,900,000 ~ 42,600,000	41,750,000	757,760
46	6,500,000 ~ 6,750,000	6,630,000	120,330	96	42,600,000 ~ 44,300,000	43,450,000	788,610
47	6,750,000 ~ 7,000,000	6,880,000	124,870	97	44,300,000 ~ 46,000,000	45,150,000	819,470
48	7,000,000 ~ 7,250,000	7,130,000	129,400	98	46,000,000 ~ 47,900,000	46,950,000	852,140
49	7,250,000 ~ 7,500,000	7,380,000	133,940	99	47,900,000 ~ 49,800,000	48,850,000	886,620
50	7,500,000 ~ 7,750,000	7,630,000	138,480	100	49,800,000이상	50,800,000	922,020

<부표 1-3> 국민연금 보험료

(단위 : 원)

등급	보수월액 (이상~미만)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97년 이전)	보험료 (98년 이후)	보험료 (99년 이후)
1	~ 225,000	220,000	4,400	6,600	9,900
2	225,000 ~ 235,000	230,000	4,600	6,900	10,350
3	235,000 ~ 245,000	240,000	4,800	7,200	10,800
4	245,000 ~ 255,000	250,000	5,000	7,500	11,250
5	255,000 ~ 265,000	260,000	5,200	7,800	11,700
6	265,000 ~ 280,000	270,000	5,400	8,100	12,150
7	280,000 ~ 300,000	290,000	5,800	8,700	13,050
8	300,000 ~ 325,000	310,000	6,200	9,300	13,950
9	325,000 ~ 355,000	340,000	6,800	10,200	15,300
10	355,000 ~ 385,000	370,000	7,400	11,100	16,650
11	385,000 ~ 420,000	400,000	8,000	12,000	18,000
12	420,000 ~ 460,000	440,000	8,800	13,200	19,800
13	460,000 ~ 500,000	480,000	9,600	14,400	21,600
14	500,000 ~ 545,000	520,000	10,400	15,600	23,400
15	545,000 ~ 595,000	570,000	11,400	17,100	25,650
16	595,000 ~ 645,000	620,000	12,400	18,600	27,900
17	645,000 ~ 700,000	670,000	13,400	20,100	30,150
18	700,000 ~ 760,000	730,000	14,600	21,900	32,850
19	760,000 ~ 820,000	790,000	15,800	23,700	35,550
20	820,000 ~ 885,000	850,000	17,000	25,500	38,250
21	885,000 ~ 955,000	920,000	18,400	27,600	41,400
22	955,000 ~ 1,025,000	990,000	19,800	29,700	44,550
23	1,025,000 ~ 1,095,000	1,060,000	21,200	31,800	47,700
24	1,095,000 ~ 1,170,000	1,130,000	22,600	33,900	50,850
25	1,170,000 ~ 1,250,000	1,210,000	24,200	36,300	54,450
26	1,250,000 ~ 1,335,000	1,290,000	25,800	38,700	58,050
27	1,335,000 ~ 1,425,000	1,380,000	27,600	41,400	62,100
28	1,425,000 ~ 1,515,000	1,470,000	29,400	44,100	66,150
29	1,515,000 ~ 1,610,000	1,560,000	31,200	46,800	70,200
30	1,610,000 ~ 1,710,000	1,660,000	33,200	49,800	74,700
31	1,710,000 ~ 1,810,000	1,760,000	35,200	52,800	79,200
32	1,810,000 ~ 1,915,000	1,860,000	37,200	55,800	83,700
33	1,915,000 ~ 2,030,000	1,970,000	39,400	59,100	88,650
34	2,030,000 ~ 2,135,000	2,080,000	41,600	62,400	93,600
35	2,135,000 ~ 2,245,000	2,190,000	43,800	65,700	98,550
36	2,245,000 ~ 2,360,000	2,300,000	46,000	69,000	103,500
37	2,360,000 ~ 2,475,000	2,420,000	48,400	72,600	108,900
38	2,475,000 ~ 2,600,000	2,540,000	50,800	76,200	114,300
39	2,600,000 ~ 2,730,000	2,670,000	53,400	80,100	120,150
40	2,730,000 ~ 2,870,000	2,800,000	56,000	84,000	126,000
41	2,870,000 ~ 3,010,000	2,940,000	58,800	88,200	132,300
42	3,010,000 ~ 3,150,000	3,080,000	61,600	92,400	138,600
43	3,150,000 ~ 3,310,000	3,230,000	64,600	96,900	145,350
44	3,310,000 ~ 3,450,000	3,380,000	67,600	101,400	152,100
45	3,450,000 이상	3,600,000	72,000	108,000	162,000

## 〈부표 2〉 2002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부표 2-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2000년 4/4분기~2001년 3/4분기)

(단위 :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1,138,330	1,406,279	1,693,384	1,882,087	1,880,505
식료품	330,828	397,823	468,149	516,295	519,766
순주거	45,170	44,889	45,317	44,281	49,083
광열수도	68,425	80,280	89,420	105,736	111,445
가구집기	45,872	50,126	61,904	65,551	57,364
피복신발	69,980	80,162	93,359	100,457	90,287
보건의료	63,753	69,913	71,061	72,986	167,590
교육교양	87,954	183,111	336,747	404,219	394,286
교통통신	179,931	231,421	251,313	269,104	225,272
기타소비	246,417	268,554	276,115	303,458	265,411
총소비지출	1,507,295	1,820,226	2,173,710	2,448,289	2,417,132
총주거	414,135	458,836	525,643	610,484	585,710

주 :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부표 2-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2000년 4/4분기~2001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가구(A)	최빈값 계층가구(B)	비율(=B/A)
2인 가구	1,507,295	1,093,183	0.7253
3인 가구	1,820,226	1,353,628	0.7437
4인 가구	2,173,710	1,663,890	0.7655
5인 가구	2,448,289	1,880,552	0.7681
6인 가구	2,417,132	1,837,446	0.7602

<부표 2-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0년 4/4분기~2001년 3/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3,199	155,435	0.8986
주 거	-21,586	194,857	0.8468
광열수도	-3,367	35,036	0.6457
가구집기	-1,041	12,708	0.2222
피복신발	-1,914	23,714	0.4179
보건의료	-1,490	19,159	0.2344
교육교양	6,532	18,953	0.5579
교통통신	-6,712	75,602	0.7553
기타소비	-8,332	83,433	0.6661

<부표 2-4> 비목별 · 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2000년 4/4분기~2001년 3/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42,236	258,075	347,517	410,562	447,210
주거	173,270	303,368	390,293	434,045	434,625
광열수도	31,669	56,606	74,808	86,278	91,014
가구집기	11,667	21,252	28,756	34,178	37,518
피복신발	21,799	39,770	53,913	64,226	70,712
보건의료	17,669	32,357	44,064	52,791	58,536
교육교양	25,485	64,036	115,651	180,331	258,075
교통통신	68,890	124,355	166,396	195,012	210,204
기타소비	75,100	133,536	175,306	200,412	208,853

<부표 2-5> 비목별 · 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 (2000년 4/4분기~2001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0.304	0.551	0.742	0.877	0.955
주거	0.330	0.577	0.743	0.826	0.827
광열수도	0.354	0.633	0.837	0.965	0.999
가구집기	0.188	0.343	0.465	0.552	0.606
피복신발	0.234	0.426	0.577	0.688	0.757
보건의료	0.249	0.455	0.620	0.743	0.824
교육교양	0.076	0.190	0.343	0.536	0.766
교통통신	0.274	0.495	0.662	0.776	0.836
기타소비	0.272	0.484	0.635	0.726	0.756

<부표 2-6> 1인가구 순식료품비(2001년 4/4분기)

(단위 : 원)

	품 목	소비자가격		품 목	소비자가격	
곡류	쌀	692.1	채소·해초	표고버섯	22.6	
	보리쌀	10.2		양송이버섯	12.8	
	콩	52.5		느타리버섯	44.0	
	팥	5.8		풋고추	53.6	
	현미	12.0		김	93.3	
	밀가루	3.1		미역	68.5	
육류	쇠고기	445.0		다시마	5.1	
	돼지고기	289.4		배추김치	469.7	
	닭고기	40.1		깍두기	105.9	
	내장등(곱창)	11.9		과실	사과	205.1
	햄	43.1	배		17.8	
유란	달걀	61.8	감		21.6	
	두부	55.1	포도		18.0	
	우유	272.0	복숭아		11.8	
어개류	조기	215.0	밀감		248.0	
	명태	117.7	수박		78.2	
	고등어	97.8	참외		14.3	
	갈치	98.6	유지·조미료		참기름	24.8
	냉동오징어	63.9			콩기름	7.6
	마른 멸치	265.9		옥수수기름	3.2	
	참치통조림	39.9		설탕	5.2	
	게맛살	34.8		마늘	46.3	
채소·해초	무	10.3		소금	2.0	
	열무	16.5		참깨	48.0	
	배추	5.8		밤	10.7	
	양배추	4.6		고추장	29.0	
	파	26.9		간장	17.4	
	양파	25.4	된장	20.0		
	시금치	54.5	빵 및 과자	식빵	42.6	
	콩나물	48.5		국수	26.0	
	상추	19.3		라면	32.7	
	당근	23.6		땅콩	14.8	
	오이	20.8		콜라	68.3	
	호박	13.6		유산균발효유	50.8	
	감자	58.3		아이스크림	21.3	
	고구마	38.0	전체 (2,164 kcal 기준)		5254.8	

주 : 소비자 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를 단순 평균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 가격조사 가격월보』, 2001. 10.

한국물가협회, 『월간 물가자료』, 2001. 10.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월간 유통물가』, 2001. 10.

한국노동연구원 자체 시장조사 등.

<부표 2-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1년 4/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20,030	205,161	0.8430
주거	-20,750	220,991	0.7377
광열수도	-4,171	38,414	0.6523
가구집기	-3,259	29,333	0.1060
피복신발	-7,007	56,026	0.3319
보건의료	-3,435	33,000	0.1390
교육교양	8,906	34,390	0.4427
교통통신	-14,303	120,854	0.4533
기타소비	-23,555	175,112	0.3297

<부표 2-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2001년 4/4분기)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Y <sub>4</sub> )	평균가구원수가구 추정치(Y <sub>A</sub> )	4인가구평균값환산치 (Y×Y <sub>4</sub> ÷Y <sub>A</sub> )
식료품	448,587	500,160	465,878	481,597
주거	494,744	551,966	511,362	534,028
광열수도	79,144	86,917	82,371	83,512
가구집기	59,986	65,190	62,047	63,025
피복신발	103,930	111,994	109,474	106,322
보건의료	70,182	77,046	72,479	74,604
교육교양	225,298	280,063	219,719	287,175
교통통신	232,966	254,571	245,522	241,552
기타소비	304,338	323,573	323,063	304,819

<부표 2-9> 비목별 ·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2001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92,037	348,434	469,192	554,310	603,789
주거	176,035	308,208	396,519	440,970	441,558
광열수도	29,577	52,865	69,866	80,577	83,428
가구집기	11,878	21,637	29,277	34,797	38,198
피복신발	24,826	45,293	61,399	73,145	80,530
보건의료	18,550	33,970	46,261	55,423	61,455
교육교양	21,734	54,609	98,626	153,784	220,084
교통통신	66,214	119,525	159,933	187,438	202,040
기타소비	82,907	147,418	193,531	221,246	230,565

<부표 2-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2001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출	623,758	1,131,959	1,524,603	1,801,690	1,961,648
비소비지출	45,778	99,886	143,749	171,683	191,107
조 세	0	17,961	32,151	44,252	50,057
소 득 세	0	16,328	29,228	40,229	45,506
주 민 세	0	1,633	2,923	4,023	4,551
사회 보험	45,778	81,925	111,599	127,431	141,050
건강보험	11,730	20,400	27,370	32,470	35,190
고용보험	3,898	7,075	9,529	11,261	12,260
국민연금	30,150	54,450	74,700	83,700	93,600

<부표 2-11> 2002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2001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비 지출	499,006	623,758	1,131,959	1,524,603	1,801,690	1,961,648
식 료 품	153,629	192,037	348,434	469,192	554,310	603,789
주 거	140,828	176,035	308,208	396,519	440,970	441,558
광열수도	23,662	29,577	52,865	69,866	80,577	83,428
가구집기	9,503	11,878	21,637	29,277	34,797	38,198
피복신발	19,861	24,826	45,293	61,399	73,145	80,530
보건의료	14,840	18,550	33,970	46,261	55,423	61,455
교육교양	17,387	21,734	54,609	98,626	153,784	220,084
교통통신	52,971	66,214	119,525	159,933	187,438	202,040
기타소비	66,326	82,907	147,418	193,531	221,246	230,565
비소비지출	36,379	45,778	99,886	143,749	171,683	191,107
조 세	0	0	17,961	32,151	44,252	50,057
소 득 세	0	0	16,328	29,228	40,229	45,506
주 민 세	0	0	1,633	2,923	4,023	4,551
사회 보험	36,379	45,778	81,925	111,599	127,431	141,050
건강보험	9,860	11,730	20,400	27,370	32,470	35,190
고용보험	3,119	3,898	7,075	9,529	11,261	12,260
국민연금	23,400	30,150	54,450	74,700	83,700	93,600
생 계 비	535,385	669,536	1,231,844	1,668,352	1,973,373	2,152,755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

### 〈부표 3〉 200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부표 3-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1999년 4/4분기~2000년 3/4분기)

(단위 :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1,036,348	1,292,569	1,583,346	1,766,839	1,641,156
식료품	311,674	389,449	447,844	492,508	478,561
순주거	40,763	36,713	37,296	37,736	27,965
광열수도	65,299	75,025	82,875	99,624	110,541
가구집기	41,103	46,872	56,968	57,882	57,836
피복신발	59,664	75,376	81,609	88,112	92,960
보건의료	59,398	62,733	67,361	73,755	63,498
교육교양	85,676	178,032	336,446	398,395	375,660
교통통신	157,531	196,219	214,262	229,026	193,154
기타소비	215,239	232,150	258,686	289,801	240,983
총소비지출	1,403,599	1,699,404	2,040,269	2,274,936	2,156,550
총주거	408,014	443,547	494,219	545,833	543,358

주 :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부표 3-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1999년 4/4분기~2000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가구(A)	최빈값 계층가구(B)	비율(=B/A)
2인 가구	1,403,599	1,028,332	0.7326
3인 가구	1,699,404	1,269,984	0.7473
4인 가구	2,040,269	1,544,252	0.7569
5인 가구	2,274,936	1,725,202	0.7584
6인 가구	2,156,550	1,608,416	0.7458

<부표 3-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9년 4/4분기 ~ 2000년 3/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3,789	151,951	0.9048
주 거	-23,249	195,208	0.8522
광열수도	-2,808	31,095	0.6506
가구집기	-1,144	12,753	0.2270
피복신발	-1,887	22,111	0.4110
보건의료	-1,918	19,462	0.2311
교육교양	6,370	16,716	0.5622
교통통신	-6,581	68,978	0.7364
기타소비	-7,609	77,966	0.6736



<부표 3-4> 비목별 · 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1999년 4/4분기~2000년 3/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38,162	248,746	331,752	387,180	415,031
주거	171,959	297,419	376,381	408,844	394,808
광열수도	28,287	50,957	68,012	79,449	85,270
가구집기	11,608	20,928	27,959	32,700	35,153
피복신발	20,224	36,673	49,348	58,249	63,376
보건의료	17,544	31,252	41,124	47,161	49,362
교육교양	23,085	58,910	107,474	168,777	242,820
교통통신	62,397	111,633	147,706	170,619	180,369
기타소비	70,358	125,498	165,422	190,128	199,617

<부표 3-5> 비목별 · 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1999년 4/4분기~2000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0.309	0.555	0.741	0.865	0.927
주거	0.348	0.602	0.762	0.827	0.799
광열수도	0.341	0.615	0.821	0.959	0.999
가구집기	0.204	0.367	0.491	0.574	0.617
피복신발	0.248	0.449	0.605	0.714	0.777
보건의료	0.260	0.464	0.611	0.700	0.733
교육교양	0.069	0.175	0.319	0.502	0.722
교통통신	0.291	0.521	0.689	0.796	0.842
기타소비	0.272	0.485	0.639	0.735	0.772

<부표 3-6> 1인가구 순식료품비(2000년 4/4분기)

(단위 : 원)

	품 목	소비자가격		품 목	소비자가격
곡류	쌀	679.8	채소·해초	표고버섯	8.5
	보리쌀	10.3		양송이버섯	7.6
	콩	54.6		느타리버섯	21.6
	팥	6.2		풋고추	38.6
	현미	12.0		김	95.5
	밀가루	2.8		미역	133.0
육류	쇠고기	329.8		다시마	5.1
	돼지고기	247.8		배추김치	399.4
	닭고기	35.6		깍두기	90.0
	내장등(곱창)	11.3	과실	사과	149.1
	햄	45.2		배	17.7
유란	달걀	56.9		감	19.3
	두부	52.7		포도	19.2
	우유	260.9		복숭아	65.4
어개류	조기	500.0		밀감	78.9
	명태	106.1		수박	107.6
	고등어	93.5		참외	41.2
	갈치	94.0		유지·조미료	참기름
	냉동오징어	61.4	콩기름		7.3
	마른 멸치	140.7	옥수수기름		3.2
	참치통조림	36.0	설탕		4.7
	게맛살	38.2	마늘		45.6
채소·해초	무	18.0	소금		2.0
	열무	18.9	참깨		46.0
	배추	9.7	밤		14.5
	양배추	5.4	고추장	27.0	
	파	31.1	간장	14.3	
	양파	27.9	된장	18.5	
	시금치	58.1	빵 및 과자	식빵	45.6
	콩나물	45.7		국수	26.5
	상추	22.2		라면	30.4
	당근	25.5		땅콩	13.7
	오이	33.4		콜라	64.8
	호박	13.8		유산균발효유	50.8
	감자	46.2		아이스크림	21.6
	고구마	31.0	전체 (2,164 kcal 기준)	5038.9	

주 : 소비자 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를 단순 평균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 가격조사 가격월보』, 2000. 10.

한국물가협회, 『월간 물가자료』, 2000. 10.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월간 유통물가』, 2000. 10.

한국노동연구원 자체 시장조사 등.

<부표 3-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2000년 4/4분기)

	가구원수 <sup>2</sup>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7,508	187,902	0.8395
주거	-23,869	224,422	0.7647
광열수도	-3,488	35,986	0.6335
가구집기	-3,272	27,129	0.0956
피복신발	-5,317	45,908	0.3018
보건의료	-5,803	41,091	0.1212
교육교양	8,859	29,795	0.4146
교통통신	-11,088	100,250	0.5413
기타소비	-15,042	126,590	0.3933

<부표 3-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2000년 4/4분기)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Y4)	평균가구원수가구 추정치(YA)	4인가구평균값환산치 (Y×Y4÷YA)
식료품	423,116	471,482	437,958	455,504
주거	469,629	515,788	488,446	495,918
광열수도	79,641	88,135	82,294	85,294
가구집기	51,359	56,168	54,522	52,910
피복신발	90,266	98,555	94,828	93,814
보건의료	67,730	71,516	72,659	66,664
교육교양	212,187	260,921	205,665	269,195
교통통신	204,516	223,592	213,206	214,479
기타소비	244,977	265,683	257,036	253,218

<부표 3-9> 비목별 ·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2000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84,146	331,536	442,169	516,045	553,165
주거	172,550	298,442	377,675	410,249	396,165
광열수도	29,113	52,445	69,996	81,768	85,208
가구집기	10,782	19,437	25,967	30,371	32,650
피복신발	23,248	42,158	56,729	66,961	72,855
보건의료	17,362	30,929	40,699	46,673	48,851
교육교양	18,471	47,135	85,992	135,041	194,284
교통통신	62,460	111,746	147,856	170,791	180,552
기타소비	68,871	122,845	161,925	186,109	195,397

<부표 3-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2000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출	587,003	1,056,672	1,409,007	1,644,009	1,759,126
비소비지출	41,429	92,729	124,079	156,818	166,168
조 세	0	17,084	24,133	34,873	36,283
소 득 세	0	15,531	21,939	31,703	32,985
주 민 세	0	1,553	2,194	3,170	3,298
사회 보험	41,429	75,644	99,946	121,945	129,885
건강보험	9,860	18,190	24,990	32,470	35,190
고용보험	3,669	6,604	8,806	10,275	10,995
국민연금	27,900	50,850	66,150	79,200	83,700

<부표 3-11> 200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2000년 4/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비 지출	469,602	587,003	1,056,672	1,409,007	1,644,009	1,759,126
식 료 품	147,317	184,146	331,536	442,169	516,045	553,165
주 거	138,040	172,550	298,442	377,675	410,249	396,165
광열수도	23,290	29,113	52,445	69,996	81,768	85,208
가구집기	8,625	10,782	19,437	25,967	30,371	32,650
피복신발	18,599	23,248	42,158	56,729	66,961	72,855
보건의료	13,890	17,362	30,929	40,699	46,673	48,851
교육교양	14,777	18,471	47,135	85,992	135,041	194,284
교통통신	49,968	62,460	111,746	147,856	170,791	180,552
기타소비	55,096	68,871	122,845	161,925	186,109	195,397
비소비지출	32,525	41,429	92,729	124,079	156,818	166,168
조 세	0	0	17,084	24,133	34,873	36,283
소 득 세	0	0	15,531	21,939	31,703	32,985
주 민 세	0	0	1,553	2,194	3,170	3,298
사회 보험	32,525	41,429	75,644	99,946	121,945	129,885
건강보험	7,990	9,860	18,190	24,990	32,470	35,190
고용보험	2,935	3,669	6,604	8,806	10,275	10,995
국민연금	21,600	27,900	50,850	66,150	79,200	83,700
생 계 비	502,127	628,432	1,149,401	1,533,086	1,800,827	1,925,294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